

방 송 통 신 위 원 회 행 정 심 판 위 원 회

재 결

사 건 2016-3 정보부존재 처분 취소 청구
청 구 인 ■△▲
피 청 구 인 방송통신위원회
심 판 청구일 2016. 6. 9.

주 문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청 구 취 지

피청구인이 2016. 3. 30. 청구인에 대하여 한 정보부존재 통지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6. 3. 8. 피청구인에게¹⁾, ① 피청구인 직원 및 직계존비속 중 전남 ■△▲읍 ■△▲리 ■△▲사 폭포 아래에서 휴가 중 성폭행 피해를 입고 경찰 등에 신고한 내역 일체, ② ■△▲군 의원 ■△▲가 피청구인 소속 직원으로부터 성폭행사건으로

1) 청구인은 피청구인을 포함하여 인천연수구청장 등 총 14개 공공기관에 동일한 내용의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

고소당한 내역서 및 동 피해자를 위로하기 위하여 피청구인 기관으로 출장간 내역서 등 일체, ③ 동 ■△▲가 민선 6기 선거 보전비 신청한 금 32,114,870원 중 피청구인에서 사용한 선거비 집행내역서 등 일체, ④ ■△▲군청 ■△▲ 외 5인이 피청구인에 출장간 출장사무내역서 등 일체 및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위 5인의 자택을 방문한 내역서 등 일체(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는 피청구인이 직무상 보유 관리하지 않은 정보라는 이유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6조 제3항, 제4항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6. 3. 30. 청구인에게 정보부존재 통지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피청구인을 상대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으나, 이에 피청구인은 직무상 보유·관리하지 않는 정보임을 이유로 정보부존재 통지를 하였는데, 청구인은, 행동하는 양심은 부조리를 직접 대면하고 맞서 싸워 주변을 변화시키고 행동하는 양심이 세상을 바꾼다는 이유로 정보부존재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공공기관이 그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보공개 거부처분의 취소 및 해당 정보의 공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인바, 청구인이 청구한 정보는 정보공개법상 피청구인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라고 상당한 개연성을 가지고 청구한 것이라고 보이지 않으며, 피청구인이 직무상 이 사건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행정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는 것이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3조, 제5조, 제13조

정보공개법 제2조, 제3조, 제5조, 제9조, 제11조, 제13조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6조 제3항, 제4항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정보공개 청구서, 정보부존재 통지서 등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6. 3. 18.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사본출력물 형태로 공개해 달라고 청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6. 3. 30. 이 사건 정보가 피청구인에게 존재하지 않아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6조 제3항 및 제4항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정보부존재 통지를 하였다.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행정심판법」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5조 제1호 및 제13조 제1항에 따르면 취소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심판으로서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2) 정보공개법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9조 제1항에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동 법률이 정하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공개 대상이 된다고 규정하여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만이 공개 대상이 되는 정보라고 할 것인데, 여기에서 정보공개 대상이 되는 정보는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물리적·기술적으로 공개가 가능한 것이어야 하고, 해당 정보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상태 그대로 공개하는 것이므로 공공기관이 그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공개청구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3두9459 판결).

3) 정보공개법 제11조 제4항에 의하면 공공기관은 정보의 비공개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고, 이 경우 비공개 이유와 불복(不服)의 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하며(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통지),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4항 및 제3항에 의하면 공개 청구된 정보를 보유·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인 경우에는 청구인의 청구에 따를 수 없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어 청구인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여(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2 서식에 의한 통지), 공개 청구된 정보를 보유·관리하지 아니한 경우를 정보공개법 제11조 제4항 소정의 비공개결정과 달리 처리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나. 판 단

청구인은 정보를 공개하여 부조리를 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정보부존재를 이유로 공개를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2016. 3. 30. 이 사건 정보는 부존재하다고 통지하였고, 청구인도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에 대해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확인되지 않는바, 청구인에게는 이 사건 정보에 대한 부존재 통지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행정심판 청구는 행정심판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고 할 것인바,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2016. 6. 17.

방송통신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



정 본 입니다.

2016. 6. 17.

방송통신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